

김포시의회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·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제 3222호
----------	---------

제출년월일 2023. 4. 7.
제출자 권민찬 의원

1. 제안이유

○ 약칭 위치 변경 및 조례 내 인용조문 불일치를 정비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「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」 약칭 위치 변경(안 제1조 → 안 제2조)
나. 인용조문 변경(안 제3조, 제8조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 법령 및 현행 규정 : 붙임 참조

나. 예산조치 : 해당없음

다. 그 밖의 사항

1) 입법예고

가) 예고기간 : 2023. 4. 12. ~ 2023. 4. 17.

나) 예고결과 :

2) 부서협의 : 해당없음

3) 관련부서 : 의회사무국

김포시의회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·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김포시의회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·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「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”을 “「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」”로 한다.

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법 제3조제2항”을 “「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3조제2항”으로 한다.

제3조제3항 중 “제5조”를 “제4조”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“이라 한다”를 “이라 한다”로 한다.

제8조제1항 중 “제4조”를 “제3조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제4조제4항 단서의 규정”을 “제3조제4항의 단서규정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<u>공무원직장 협의회</u>의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 <p>제2조(협의회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) ① <u>법 제3조제2항</u>에 따라 협의회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p>1. ~ 8. (생략)</p> <p>② ~ ④ (생략)</p> <p>제3조(협회의 설립) ①·② (생략)</p> <p>③ 법 제2조제3항에 따른 협의회 설립사실의 통보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르며 협의회 대표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<u>제5조</u>에 따른 협의회규정과 협의위원명부, 협의회 회원명부 및 설립총회 회의록을 붙여야 한다.</p> <p>④ 의장은 제3항에 따른 설립사실통보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증(이하 “설립증”이라 한다)을 교부하여야 한다. 다만, 설립사실통</p>	<p>제1조(목적) ----- 「공무원직장 협의회의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」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.</p> <p>제2조(협의회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) ① 「<u>공무원직장협의회</u>의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<u>제3조제2항</u>-----</p> <p>-----.</p> <p>1. ~ 8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~ ④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3조(협회의 설립) ①·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 <u>제4조</u>-----</p> <p>-----</p> <p>④ 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 <u>이라 한다</u>-----</p> <p>-----.</p>

보서의 기재사항 누락 또는 협의회 규정 등 붙임서류의 미비 등으로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그 보완을 요구하여야 하며, 설립 준비대표자가 이를 보완한 후에 설립증을 교부하여야 한다.

⑤ (생략)

제8조(이의신청에 대한 조치) ① 김포시의회 소속 공무원 중 협의회 가입 대상 공무원은 제4조에 따라 의장에게 제출한 설립사실통보서 및 회원 명부 등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설립기관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접수받은 의장은 사실조사를 실시하고, 사실과 다른 사항에 대해서는 제4조제4항 단서의 규정을 준용하여 협의회에 시정·보완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.

③ (생략)

⑤ (현행과 같음)

제8조(이의신청에 대한 조치) ① -----

----- 제3조 -----

② -----

----- 제3조제4항의 단서규정 -----

③ (현행과 같음)

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

제1조(목적) 이 법은 공무원의 근무환경 개선, 업무능률 향상 및 고충처리 등을 위한 직장협의회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설립) ① 국가기관, 지방자치단체 및 그 하부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직장협의회(이하 “협의회”라 한다)를 설립할 수 있다.

② 협의회는 기관 단위로 설립하되, 하나의 기관에는 하나의 협의회만을 설립할 수 있다.

③ 협의회를 설립한 경우 그 대표자는 소속 기관의 장(이하 “기관장”이라 한다)에게 설립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.

제2조의2(연합협의회)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내에 설립된 협의회를 대표하는 하나의 연합협의회를 설립할 수 있다.

1. 국회·법원·헌법재판소·선거관리위원회

2. 「정부조직법」 제2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과 감사원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

3.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·특별자치도 및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·특별자치도의 교육청

② 연합협의회를 설립한 경우 그 대표자는 제1항 각 호의 기관의 장(국회사무총장·법원행정처장·헌법재판소사무처장·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, 중앙행정기관의 장,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·교육감 등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에게 설립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.

제3조(가입 범위) ① 협의회에 가입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<개정 2011. 5. 23., 2019. 12. 10., 2022. 4. 26.>

1. 일반직공무원

2. 특정직공무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

가. 외무영사직렬·외교정보기술직렬 외무공무원

나. 경찰공무원

다. 소방공무원

3. 삭제 <2012. 12. 11.>

4. 삭제 <2011. 5. 23.>

5. 별정직공무원
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협의회에 가입할 수 없다. <개정 2019. 12. 10., 2022. 4. 26.>

1. 삭제 <2022. 4. 26.>

2. 업무의 주된 내용이 지휘·감독권을 행사하거나 다른 공무원의 업무를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공

무원

3. 업무의 주된 내용이 인사, 예산, 경리, 물품출납, 비서, 기밀, 보안, 경비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

③ 기관장은 해당 기관의 직책 또는 업무 중 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협의회에의 가입이 금지되는 직책 또는 업무를 협의회와 협의하여 지정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. <신설 2019. 12. 10.>

제4조(가입 및 탈퇴의 자유) 공무원은 자유로이 협의회에 가입하거나 협의회를 탈퇴할 수 있다.

제5조(협의회등의 기능) ① 협의회 및 연합협의회(이하 “협의회등”이라 한다)는 소속 기관장 또는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기관의 장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. <개정 2022. 4. 26.>

1. 해당 기관 고유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
2. 업무능률 향상에 관한 사항
3. 소속 공무원의 공무와 관련된 일반적 고충에 관한 사항
4. 소속 공무원의 모성보호 및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
5. 기관 내 성희롱, 괴롭힘 예방 등에 관한 사항
6. 그 밖에 기관의 발전에 관한 사항

② 협의회등은 제1항에 따른 협의를 할 때 협의회등 구성원의 직급 등을 고려하여 협의회등 구성원의 의사를 고루 대변할 수 있는 협의위원을 선임(選任)하여야 한다. <개정 2022. 4. 26.>

제5조의2(협의회등의 활동) 협의회등의 활동은 근무시간 외에 수행하여야 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근무시간 중에 수행할 수 있다.

1. 협의회등과 기관장 또는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기관의 장과의 협의
2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

제6조(기관장의 의무) ① 기관장 또는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기관의 장은 협의회등이 문서로 명시하여 협의를 요구하면 성실히 협의하여야 한다. <개정 2022. 4. 26.>

② 기관장 또는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기관의 장은 협의회등과 문서로 합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최대한 이를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 <개정 2022. 4. 26.>

③ 기관장 또는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기관의 장은 협의회등의 조직 및 운영과 관련하여 소속 공무원에게 불리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 <개정 2022. 4. 26.>

④ 기관장 또는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기관의 장은 협의회등과의 합의사항이 있는 경우 그 이행현황을 공개하여야 하고, 구체적인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<신설 2022. 4. 26.>

제7조(협의회등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) 협의회등의 설립 단위, 가입 범위, 그 밖에 협의회등의 구성에 관한 사항과 협의위원의 선임, 협의회등의 협의절차·시기·방법, 그 밖에 협의회등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, 대법원규칙, 헌법재판소규칙,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,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한다. <개정 2022. 4. 26.>

김포시의회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·운영에 관한 조례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협의회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) ①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협의회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노동운동이 허용되는 공무원: 지방공무원법 제58조제1항 단서에 따라 노동운동이 허용되는 공무원
2. 지휘·감독의 직책에 종사하는 공무원: 법령·훈령 또는 사무분장에 따라 다른 공무원에게 지휘·감독권을 행사하는 모든 직책에 종사하는 공무원(직무대리 관련 규정에 따라 명확한 요건을 갖춘 법정대리자와 인사명령에 따라 직무대리 명령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).
3. 인사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: 인사 관련 업무를 주된 업무로 수행하는 공무원(자료정리·타자 등 단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제외한다)
4. 예산·경리·물품출납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: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및 「지방재정법」에 규정된 업무를 주된 업무로 수행하는 공무원(자료정리·타자 등 단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제외한다)
5. 비서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: 비서업무를 실제로 수행하는 공무원
6. 기밀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: 감사·조사·비밀·유선교환업무 등 기밀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.
7. 보안·경비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: 공공안전의 목적상 특정한 또는 특정시설에 대한 보안·경비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
8.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: 협의회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

② 제1항제3호의 규정에서 "인사 관련 업무를 주된 업무로 수행하는 공무원"이란 신규임용·승진임용·전직·전보·겸임·파견·강임·휴직·직위해제·정직·복직·면직·해임 및 파면과 관련된 업무를 주된 업무로 수행하는 공무원을 말한다.

③ 제1항제6호에서 "비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"이란 비밀업무를 관리·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.

④ 김포시의회 의장(이하 ‘의장’이라 한다.)은 해당 기관의 직책 또는 업무 중 협의회 가입이 금지되는 직책 또는 업무를 지정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지정 및 공고의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.

제3조(협의회의 설립) ① 협의회를 설립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설립취지, 설립총회의 개최일시·장소, 설립준비대표자 등이 기재된 안내문을 소속 공무원들이 볼 수 있는 장소에 7일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.

② 의장은 해당 기관에 둘 이상의 설립총회가 준비되고 있는 경우에는 설립준비대표자를 통하여 하나

의 설립총회를 개최하도록 조정할 수 있다.

- ③ 법 제2조제3항에 따른 협의회 설립사실의 통보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르며 협의회 대표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제5조에 따른 협의회규정과 협의위원명부, 협의회 회원명부 및 설립총회 회의록을 붙여야 한다.
- ④ 의장은 제3항에 따른 설립사실통보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증(이하 "설립증"이라한다)을 교부하여야 한다. 다만, 설립사실통보서의 기재사항 누락 또는 협의회 규정 등 붙임서류의 미비 등으로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그 보완을 요구하여야 하며, 설립준비대표자가 이를 보완한 후에 설립증을 교부하여야 한다.
- ⑤ 협의회는 설립증을 교부받은 날에 설립된 것으로 본다.

제4조(협의회 규정) 협의회는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협의회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한 협의회 규정을 제정하여야 한다.

- 1. 명칭
- 2. 목적 및 사업
- 3. 협의위원의 수에 관한 사항
- 4. 대표자와 협의위원의 선임방법·임기·후임자의 선임시기 등에 관한 사항
- 5. 회원에 관한 사항
- 6. 회의에 관한 사항
- 7. 협의회 규정의 변경에 관한 사항
- 8. 규율에 관한 사항
- 9. 회계에 관한 사항
- 10. 해산에 관한 사항

제5조(협회의 가입 및 탈퇴) ① 협의회 회원의 자격과 가입절차 등에 대해서는 법령의 범위에서 협의회 규정을 따른다.

- ② 협의회에 가입하거나 협의회를 탈퇴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별지 제4호서식의 가입(탈퇴)원서를 협의회 대표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- ③ 협의회가 정당한 이유 없이 회원의 가입을 제한하는 경우에도 협의회 규정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협의회 가입원서를 협의회에 제출한 때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. 이 경우 우편발송인 경우에는 협의회에 도달한 때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.
- ④ 협의회에 가입한 공무원이 승진·전보·사무분장의 변경 등으로 협의회 가입이 금지된 공무원이 된 경우에는 해당 인사명령일 또는 사무분장의 변경 일에 협의회에서 탈퇴한 것으로 본다.
- ⑤ 제4항에 따른 인사명령의 발령부서 또는 사무분장의 변경부서에서는 그 변동사실을 협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.

- ⑥ 회원이 협의회를 탈퇴하고자 할 때에는 제4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탈퇴원서를 해당 협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 이 경우 탈퇴원서가 해당 협의회에 도달하였을 때 탈퇴한 것으로 본다.

제6조(회원의 제명 의결 시 진술권 부여) 회원의 제명은 협의회 규정에 따라 행하며, 협의회 규정이 정한 의결기관의 의결절차를 거쳐 처리하여야 하며, 제명의결을 위한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제명대상자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 의결 전 본인에게 충분히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.

제7조(협회의 대표자와 협의위원) ① 협회의 대표자와 협의위원은 해당 협의회에 가입한 공무원 중에서 선임하며, 대표자를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.

- ② 협회의 대표자와 협의위원 임후보자의 자격은 합리적인 요건을 정하여 협의회 규정으로 제한할 수 있다.
- ③ 협의회는 협의회 구성원의 직종별·직급별·성별비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협의위원을 선임하여야 한다.
1. 협의회 가입 공무원의 1할 이상을 차지하는 직종별·직급별로 가급적 1명 이상의 협의위원이 선임되도록 한다.
 2. 여성공무원이 1할 이상인 경우에는 1명 이상의 여성공무원을 협의위원으로 선임한다.
- ④ 협회의 대표자와 협의위원의 임기는 협회의 규정으로 정하되, 2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연임할 수 있다.
- ⑤ 협의회 가입자격의 상실 등으로 인하여 협회의 대표자 또는 협의위원이 교체된 경우 후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 다만, 남은 임기가 3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
제8조(이의신청에 대한 조치) ① 김포시의회 소속 공무원 중 협의회 가입대상 공무원은 제4조에 따라 의장에게 제출한 설립사실통보서 및 회원명부 등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설립기관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.

- ②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접수받은 의장은 사실조사를 실시하고, 사실과 다른 사항에 대해서는 제4조제4항 단서의 규정을 준용하여 협의회에 시정·보완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.
- ③ 의장은 제2항에 따른 사실조사 처리결과를 이의신청을 제출한 공무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제9조(협의회와 의장과의 협의) ① 협의회와 의장은 상호 신의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협의에 임하여야 한다.

- ② 협의회와 의장은 매년 2회 정기적으로 협의하여야 한다. 다만,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협의할 수 있다.
- ③ 협회의 대표자가 의장과 협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협의일 7일까지 협의하고자 하는 사항을 문서로 설립기관의 장에게 요구하여야 한다.

- ④ 의장은 협의회와 직접 협의하여야 한다. 다만, 의장이 공무수행 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대리자를 지정하여 협의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 할 수 있으며, 협의 시 관련 공무원을 배석하게 할 수 있다.
- ⑤ 협의회와 의장과의 협의는 원칙적으로 공개한다. 다만, 협의회와 의장과의 합의에 따라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.
- ⑥ 협의회와 의장은 협의회 사무 기록 등의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기 위하여 소속 회원 또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각각 1명씩의 간사를 둘 수 있다.
- ⑦ 협의회와 의장이 협의하였을 때에는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각각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.
 1. 개최일시 및 장소
 2. 출석한 기관장(직무 대리자를 포함 한다), 대표자 및 협의위원
 3. 협의내용 및 합의사항
 4. 그 밖의 토의사항

제10조(합의사항의 이행) 협의회와 의장은 합의한 사항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에게 알려야 하고, 이의 이행에 노력하여야 한다.

- 제11조(협의회의 의무)**
- ① 협의회는 협의회 규정, 협의위원명부, 회원명부 및 회의록을 관리하여야 한다.
 - ② 협의회는 대표자, 협의위원 또는 협의회 규정의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된 날부터 3일 이내에 의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, 회원의 변경 사항에 대해서는 반기별로 설립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 - ③ 의장이 제2항에 따라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검토하여 회원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한 자가 있거나 협의회규정 등이 법규에 위반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협의회에 즉시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,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협의회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.

제12조(근무시간 중 협의회 활동의 제한)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업무는 근무시간 외에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협의회와 의장과의 협의는 협의회와 의장과의 합의에 따라 근무시간 중에 할 수 있다.

제13조(협의회 전임공무원 금지) 협의회에는 협의회의 업무를 전담하는 공무원은 둘 수 없다.

제14조(협의회에 대한 지원) 의장은 협의회가 요구하는 경우에 협의회의 활동을 위하여 해당 기관의 회의장소·사무장비 등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.

제15조(세부사항 위임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